KOSHA GUIDE

M - 120 - 2012

#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윤 상 용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- 제·개정경과
  - 1999년 7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1999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 - EN981(1997) : SAFETY OF MACHINERY SYSTEM OF AUDITORY AND VISUAL DANGER AND INFORMATION SIGNALS
  - ISO11429(1996) : ERGONOMICS SYSTEM OF AUDITORY AND VISUAL DANGER AND INFORMATION SIGNALS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2장 제19조(경보용 설비 등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침

##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편 제2장 제19조(경보용 설비 등)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 및 청각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기계·기구 및 설비로 인한 위험신호에서부터 위험상황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위험신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타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한 규정이 있거나 군사 등 특수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  - (가) "교번음(ALTERNATING SOUND)"이라 함은 최소 0.15초 이상의 일정 주기로 지속되는 두개 또는 세개의 음향스펙트럼에서 변동되는 소리를 말한다.
  - (나) "교번광(ALTERNATING LIGHT)"이라 함은 최소 0.15초 이상의 일정주기로 지속되는 두개 또는 세개의 광학스펙트럼에서 변동되는 빛을 말한다.
  - (다) "파열음(BURSTS OF SOUND)"이라 함은 0.25초에서 0.125초 사이의 정지 시간이 있는 단속음을 말한다.
  - (라) "섬광(FLASH)"이라 함은 지속시간이 0.5초미만인 빛을 말한다.

#### KOSHA GUIDE

#### M - 120 - 2012

- (마) "속파(QUICK-PULSE)"라 함은 지속시간이 0.5초미만인 소리를 말한다.
- (바) "분절(SEGMENT)"이라 함은 시각신호나 청각신호에 있어서 신호특성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여러 부분들 중의 하나를 말한다.
- (사) "스펙트럼(SPECTRUM)"이라 함은 주파수나 파장의 함수로 표현되는 소리 또는 빛의 강도나 음압 수준을 말한다.
- (아) "변동음(SWEEPING)"이라 함은 연속 혹은 불연속으로 주파수가 변화하는 소리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4. 시청각신호의 설계와 적용에 관한 일반원리

#### 4.1 개 요

- (1) 시청각 신호는 예상되는 모든 환경조건하에서 빠르게 인지될 수 있어야 하며, 신뢰성의 결여로 인하여 신호효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시청각 신호로 인하여 놀라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소리의 최초 강도는 너무 크지 않아야 하며, 일정 시간 동안 증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.

#### 4.2 신호 특성의 구분 원칙

- (1) 신호는 위험이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일정 한 형태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.
- (2) 신호의 구분은 강도나 스펙트럼에 의하여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.
- (3)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신호의 종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장소에 사용되는 신호의 종류는 제한되어야 하며 잔향과 잔상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## KOSHA GUIDE

M - 120 - 2012

#### 4.3 시청각신호의 기준

중요성이나 긴급도에 따른 일반적인 신호의 기준은 <표 1>과 같다.

#### 4.4 청각신호의 질

- (1) 변동하거나 교번하는 음향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어야 하며, 위급한 정도가 높을수록 음높이를 높이도록 한다. 다만 특정한 주파수의 분포는 규정하지 않는다.
- (2)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<표 1>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수많은 변형음을 구성할 수 있다.

#### 4.5 시각신호의 질

시각 신호의 밝기는 지속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지속시간이 0.2초 미만인 경우 신호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.

## KOSHA GUIDE M - 120 - 2012

#### <표 1> 상황별 일반적인 신호 기준

	청구	시각신호	
상 황	음향 특성	시간적 형태	(색상)
위험신호 (구조 또는 보호등의 긴급 조치가 필요)	<ul> <li>변동음</li> <li>파열음</li> <li>교번음</li> <li>(둘 또는 세 주파수</li> <li>단계)</li> </ul>	<ul> <li>연속 또는 ON/OFF를 교번</li> <li>ON/OFF를 교번</li> <li>연속 또는 ON/OFF를 교번</li> </ul>	<b>적</b> 색
<b>주의신호</b> (상황에 따라 조치 필요)	·스펙트럼의 변화 없이 0.3초 이상 지속되는 한 가지 음	· ON/OFF를 교번	황색
지시신호 (의무적 조치가 필요)	·변하지 않는 스펙트럼 을 갖는 두 세 개의 다 른 소리가 연쇄적으로 구성된 음	· 연속 또는 ON/OFF를 교번	청색
<b>정보의 안내</b> (공지)	・두 가지 음질의 종 (CHIME)소리	• 비반복(안내나 지시가 뒤 따름.)	・원칙적으로 광신 호는 사용치 않 음
<b>이상 없음</b> (위험상황의 해제)	· 스펙트럼이 변하지 않는 음	· 30초 이상 지속	녹색

- (주) 1. 시각신호와 청각신호의 스펙트럼과 주기를 반드시 동기화 할 필요는 없다.
  - 2. 시각신호와 청각신호를 동시에 사용하면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다.

KOSHA GUIDE M - 120 - 2012

### 5. 시청각 신호체계

5.1 청각(음향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

청각(음향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 기준은 <표 2>와 같다.

<표 2> 청각(음향) 신호의 특성에 대한 구성

음향	관련색광	의 미	비고
변동음 (5Hz/s ~ 5Hz/ms의 비율로 주파수를 증감 시킬수 있고, 주기중 변화도 허용됨.	적 색	위험, 긴급조치 필요	·주파수 변동율은 원칙적으로 높은 주파수대에서 가장 높게 되며 낮은 주파수대에서 낮게 된다. ·최저변동율은 400Hz이상의 주파수 나 5초미만의 분절에는 사용치 않 는다.
파열음 (그룹화하여 사용시 각그룹 은 5개이상의 펄스로 구성하 여야 하며 주파수는 4~8Hz 이어야 함)	적 색	위험, 긴급조치 필요	・반사가 있는 장소인 경우 주파수가 5Hz이상이라면 인지가 어렵다.
교번음 (각 분절이 0.15초에서 1.5초인 두 세 개의 음높 이로 구성되어야 함.)	적 색	위험, 긴급조치 필요	·동일한 분절의 음향특성은 지속시 간 뿐만 아니라 소리의 강도도 같 다.
단음 (스펙트럼의 변화없이 0.3 초 이상 지속되는 음)	황 색	주의, 경계할 것	_
<ul><li>연쇄음</li><li>(변하지 않는 스펙트럼을 갖는 두 세 개의 다른 소리가</li><li>연쇄적으로 구성된 음)</li></ul>	청 색	명령, 의무적인 행동	_
지속음 (스펙트럼이 변하지 않음)	녹 색	정상상태 이상없음	· 공공경보 후의 신호는 30초이상 유 지 되어야 한다.

KOSHA GUIDE M - 120 - 2012

5.2 시각(색상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

시각(색상)신호의 추가적인 특성기준은 <표 3>과 같다.

<표 3> 시각(색상)신호의 특성에 대한 구성

색 상	의 미	목 적	비고
적 색	·위험 ·비정상 상태	긴급 경보 정지 금지 고장	적색섬광은 긴급 대 피용으로 사용되어 야 한다.
황색	• 주의	주목이 요구됨 상황변화 일시적 중지	
청색	· 특정한 행동의 의 무가 필요함을 지 시	행동 보호 특별한 주목 안전에 관계된 규정 또는 우선 순위의 조절	적색, 황색 또는 녹 색의 사용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 사 용
녹색	· 경보해제 · 정상상태	정상 진행으로의 변환	동력장치에 대한 감 시(정상)

#### 6. 시험

시각 및 청각 신호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.